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30 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박 정·임오경·진성준

박해철 • 박지원 • 허 영

허성무 · 강유정 · 황명선

안호영 · 송옥주 · 박홍배

이학영 · 김주영 · 김태선

신정훈 · 소병훈 · 송기헌

의원(18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,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,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,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의3).

법률 제 호

#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등"이라 한다)를"을 "피해근로자등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등"이라 한다)에게 해당 조사 과정의 기간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⑧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하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피해근로자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
- 2.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
- 3.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	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
시 조치) ① (생 략)	시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	2
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	
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	
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	
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	
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	
한다. <후단 신설>	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
	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직장
	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
	날부터 7일 이내에 직장 내 괴
	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
	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
	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
	로자등"이라 한다)에게 해당
	조사 과정의 기간과 절차에 관
	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	3
사 기간 동안 <u>직장 내 괴롭힘</u>	
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	
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	
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	

등"이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~ ⑦ (생 략) <신 설>

•

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 8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 로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사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피해근로자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
- 2.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
- 3.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